

## 4-5-13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내외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인권 침해 행위 예방과 대책, 학생의 안전과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학부 및 학생자치기구 등이 주최하여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생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

1. “학생활동”이란 대학, 학생회, 학부, 동아리 등이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OT, MT, 환영회, 축제, 행사, 캠프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인권침해행위”란 신체적 가해, 문자·언어적 가해, 성적 가해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로,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 등을 가하는 행위
  - 나.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다.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신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임무)** ① 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본부, 총학생회, 부속기관 주관행사 : 학생처장
  2. 학부 학생회 · 학년별 주관 행사 : 학부장
  3. 동아리 주관행사 : 동아리 지도교수
  4. 그 밖의 학생활동 : 업무주관 부서장
- ② 안전관리 책임자는 행사를 관리·감독하며,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생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생 행사 진행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로 제출하도록 지도의 책임을 가진다.
1. 행사허가원(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학생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가. 숙박시설(장소)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
  - 나.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2.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가.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나.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3.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4. 행사 전 답사
5.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음주, 폭력, 인권침해 행위 등) 실시
6. 필요시 교직원 동행
7. 예산 집행 내역 공개

② 학생자치기구 주관 학생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표학생으로 하여금 사전답사 및 위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제6조 (보험)**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학생처에 본교가 가입 중인 보험 보상적용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확인하고, 보상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상한도액이 참여인원 대비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 예방)** ①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행사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인권침해행위예방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행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사고처리)** ①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생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선 처리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소속 부서장과 학생처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다.

② 학생처는 제1항의 사고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경중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을 보고한다.

③ 인권침해행위의 처리는 행사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lt;별지 제3호 서식\_학생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gt;

## 학생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 □ 주요사고유형

구분	행사유형	주관부서	사고유형
교내	축제	학생처	✓ 음주사고
	학생회 활동	학생처	✓ 행사 중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동아리 활동	학생처	✓ 전기사고(감전, 합선)
	입학식/졸업식	교무처	✓ 화재(폭발) 사고
	교내 학부행사	각 학부(학부사무실)	✓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포함)사고
	기타 교내행사	행사 주관부서	✓ 자연재해
교외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학생처	✓ 음주사고
	농촌봉사활동	학생처	✓ 행사 중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학생회 활동	학생처	✓ 전기사고(감전, 합선)
	동아리 활동	학생처	✓ 화재(폭발) 사고
	교외 학부행사	각 학부(학부사무실)	✓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포함)사고
	기타 교외행사	행사 주관부서	✓ 자연재해 ✓ 교통사고 ✓ 숙박시설 사고(위생·소방·전기·가스)

## □ 사고유형에 따른 예방 및 조치사항

사고유형	예방 및 조치
음주사고	✓ 예방 사전점검 ✓ 행사장(주변) 순찰
행사 중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 예방 사전점검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 구급약 비치 ✓ 119 구급대 후송
전기사고(감전, 합선)	✓ 예방 사전점검 ✓ 119 구급대 후송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화재(폭발) 사고	✓ 예방 사전점검 ✓ 행사장(주변) 순찰 ✓ 119 구급대 후송 ✓ 행사장 주변 소화기 비치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포함)사고	✓ 예방 사전점검(교육) ✓ 행사 종료 후 안전귀가 조치 ✓ 상시인원체크 ✓ 성폭력상담실 상담
자연재해	✓ 예방 사전점검 ✓ 119 구급대 후송 ※ 기타 사항은 우리 학교의 자연재난관리대책을 준용함
교통사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점검 ✓ 현장지도 ✓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 ✓ 119 구급대 후송 ✓ 구급약품 준비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숙박시설 사고 (위생·소방·전기·가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점검 ✓ 현장지도 ✓ 구급약품 준비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 자체 순찰조 편성 및 활동 ✓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 ✓ 119 구급대 후송

## □ 사고발생 시 담당부서별 역할 및 조치사항

구 분	역할 및 조치사항
사고자 또는 최초 발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의 경중 판단 - 주관부서 담당자 및 상담센터, 종합상황실 신고</li> <li>☎ 학생처 : 063-230-7724(평일), 010-2029-8615(야간 및 주말)</li> <li>☎ 종합상황실(교내) : 063-230-7731</li> <li>✓ 위급 시 119, 112 신고</li> </ul>
행사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조치 및 환자 후송</li> <li>✓ 담당 의사의 소견 확인</li> <li>✓ 사고 경위 파악 및 필요 시 학부모 연락</li> <li>✓ 행사 주관부서에서 사고 학생 및 학부모 면담</li> <li>✓ 주관부서장 보고 및 학생처 통보</li> <li>☎ 학생처 : 063-230-7724</li> <li>✓ 사고처리를 위한 부서 간 상호 협의</li> </ul>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상황 파악 및 필요시 학부모 연락</li> <li>✓ 필요시 관련 행정부서와 협의하여 사고 처리</li> </ul>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언론 대응</li> </ul>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포함)사고 발생 시 상담지원</li> <li>☎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 063-230-7705</li> </ul>